##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강성삼, 이영아, 오지훈, 김낙주 의원

발의일 : 2021. 5.

## 1. 제안이유

○ 하남시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도시브랜드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하남시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남시 상징물, 디자인 등의 유·무형 요소의 합이자 시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총합인 하남시 도시브랜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와 같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 으로 판단됨.